|  |  |  |
| --- | --- | --- |
| **국무원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2)14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문 위원회, 각 직속기구:소규모 기업은 취업증가, 경제성장 촉진, 과학기술 혁신 및 사회의 화합과 안정 등 방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위원회, 국무원은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상당히 중시하여 일련의 재세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국내외 복잡 다양한 경제적 형세의 영향을 받아, 현재 소규모 기업의 경영 압력이 심해지고, 원가상승, 융자 곤란 및 세금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의견을 제기한다. 1.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1) 소규모 기업의 업무를 훌륭히 이행한다는 신념을 증강한다. 각 급 정부와 유관 부문은 현재 소규모 기업 발전이 당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 신념을 증강하고, 지원역량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원이 국제금융위기 충격에 견고하게 대응하는 성과 및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욱 정확성을 갖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소규모 기업의 신념 향상과 굳건한 경영 및 수익성 증가 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2. 소규모 기업의 재세지원 역량을 진일보 강화한다. (2)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 항목의 세수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증치세와 영업세 징수기준을 높이고 소규모 기업의 소득세 50% 감면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전국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 시범 플랫폼 가운데 기술유형의 서비스 플랫폼을 현행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수우대정책 범위에 포함시킨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금융기관과 소규모 기업이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 금융기업의 농업 관련 대출 및 중소기업 충당금 세전공제정책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금융기관의 금융보험수입의 3% 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영업세 감면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업무 추진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의 영업세 이중과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한다. 세수체제 개혁을 발전시켜 구조적 세금감면정책을 개선하고, 소규모 기업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는 세수제도를 연구한다. (3) 재정자금 지원정책을 재선한다. 현행 중소기업의 전용자금을 지원하는 지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2012년 자금의 총 규모를 128.7억 위안에서 141.7억 위안으로 확대시키고, 이후 해마다 규모를 늘린다. 전용자금은 정책적 방향을 반영시켜 정확성, 신속성 및 운용성을 증강시키고, 주요 자금사용을 부각하여 소규모 기업과 중서부 지역에 편향한다. (4)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한다. 기금의 자금출처는 중앙재정 예산 편성, 기금수익, 기부 등을 포함한다. 중앙재정은 5년에 걸쳐 150억 위안의 자금을 편성하고, 2012년에는 30억 위안을 편성한다. 기금은 주로 지방 지도, 창업투자기구 및 기타 사회자금에 사용되며, 사업초기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한다. 기금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인 등이 기금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은 연간 이윤총액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의 세전공제를 허용한다. (5) 정부의 구매로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각 부문은 연간 정부구매 프로젝트 예산 총액의 18%이상을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구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 제품의 각기 다른 업종 상황에 대하여 6%~10%의 가격 공제를 해준다. 중대형 기업과 소규모 기업이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정부 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소규모 기업은 컨소시엄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컨소시엄의 2%~3%의 가격 공제를 받는다. 정부 구매의 신용담보 시범업무를 추진하여, 정부 구매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에게 입찰 담보, 약속이행담보 및 융자담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일부 기업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각종 비정규성 비용을 확실하게 취소한다. 중앙 및 성급 재정, 가격주관부문이 이미 취소를 발표한 행정사업 성격의 비용을 시행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일부 관리, 등기, 증명/허가분야의 행정적 성격의 비용 징수를 면제한다. 각성(구, 시)에 설립한 기업의 행정사업 성격의 수수료를 확실하게 취소한다. 행정허가 및 강제성 진입 허가 성격의 경영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한다. 유료도로의 전문적인 정리업무를 지속적으로 훌륭히 이행하여 기업의 물류원가를 절감한다. 기업의 불법적 비용, 벌금 및 각종 비용 관련 행위에 대하여 감독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사회와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 관련 권익보호 매커니즘을 개선한다. 3. 소규모 기업의 융자곤란 해소에 힘쓴다. (7) 소규모 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각 항목의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속도를 전체 대출 평균증가속도 보다 높게 하고, 대출 증가량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에는 비교적 낮은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상업은행은 국가산업정책 및 신용정책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신용 지원을 해준다. 금융기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규모 기업대출 가격책정 매커니즘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합법적이고, 준수하며 위험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상업은행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확정하며, 혁신형 및 벤처형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기업 신용장려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이미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 금융서비스의 차별화 감독정책을 시행하고, 소규모 기업 대출의 부실율에 대한 허용도를 적절하게 제고한다. 소기업 부실대출금 검토의 유관규정 개선을 진일보 연구한다. 부실대출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실대출에 대한 검토 효율성을 제고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은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채 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상업은행이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는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상권융자와 금융권 연계융자공급(Supply chain financing) 등 융자방식을 적극 발전시킨다. 소규모 기업 대출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8) 소금융 기관의 발전을 가속화 한다.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민간자본, 외자, 국제조직이 출자하여 설립한 소금융 기관에 대한 조건을 적절하게 완화한다. 소액대출회사의 단일투자자 지분보유 비율에 대한 제한을 적절하게 완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서부 지역에 촌진은행(村镇银行)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소금융 기관이 주로 소규모 기업의 시장 포지셔닝을 위하여 금융상품과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화한다. 소금융 기관의 서비스 네트워크 증가하는 것을 지도하여 현(县)과 향진(乡镇)으로 확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액대출회사는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촌진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9) 융자채널을 확대한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소기업의 상장을 위한 융자, 채권발행을 지원한다. 세분화된 채권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채권시장의 미시적 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발휘한다. 일관된 장외교역시장 구축 속도를 가속화하고, 상장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게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규모 기업이 추심어음, 채권추심, 집단신탁 및 단기융자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사모펀드 주주권 투자와 창업투자 등 융자 수단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창업투자지원 매커니즘을 개선하여 초기형 및 신형 소규모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의 지적재산권저당, 창고증권저당, 상점경영권저당, 상업신용보험증서저당, 상업팩토링, 전당 등 다양한 방식의 융자수단을 취하는 것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에게 설비 임대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소규모 기업의 대출보증보험 및 신용보험을 적극 개발한다. 소규모 기업의 융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한다. 과학기술과 금융을 결합시킨 시범업무를 심화하여 시행하고, 혁신형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양호한 투자융자환경을 조성한다. (10)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신용담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신용담보 시스템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신용담보기구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중앙재정 자금을 확대하는 지도적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담보기관은 소규모 기업의 담보업무 규모확대 및 소규모 기업의 담보비용에 대한 절감을 장려한다. 외자를 이용한 소규모 기업 담보기관 설립하는 것을 지도하여 외자를 이용하여 담보회사를 설립하는 시범업무 추진하는 것을 가속화 한다. 재담보 기관을 적극 발전시켜 위험 분산기능 강화하고, 신용기능을 강화한다. 신용보험서비스를 개선하여 소규모 기업 수요를 충족하는 보험상품을 만들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담보기관과 은행업 금융기관간의 위험분담 매커니즘 구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신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여 기업 신용 정보 수집 및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11) 소규모 기업에 대한 융자서비스를 규범화 한다. 은행조합 대출 이외에 금융기관이 소규모 기업 대출에 대한 약정수수료와 자금관리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업은행 의 서비스 비용 검사를 시행한다. 금융기관이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재무고문비, 자문비 등 비용 수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금융서비스의 불합리한 비용을 확실하게 정정한다. 민간 대출의 고금리 추세 및 대형기업이 재대출 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한다. 법에 의거하여 불법자금 모금, 금융 다단계 등 위법활동을 단속한다. 금융업 종사자와 민간 대출에 참여한자를 엄격히 금지한다.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자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여 제정한다. 4. 소규모 기업의 혁신발전 및 구조조정을 진일보 추진한다. (12)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한다. 중앙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기술개조에 사용되는 자금규모를 안배한다. 소규모 기업의 개발,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 신설비 응용, 자주적인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절약 추진,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생산과 경영조건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각 지역 역시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한 지원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13) 소규모 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소득세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키우는 계획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 기관 건립을 장려하여 산업의 공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가와 지방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및 표준제정에 참여한다. 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은 소규모 기업에게 기술혁신의 성과를 보급시킨다. 소규모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건전한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세한 과학기술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과학연구기관 및 대기업이 소규모 기업에게 연구개발시험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의 생산제조, 운영관리 및 시장개척에 관한 정보화 응용수준을 중점적으로 제고한다. IT기업, 통신사업자가 소규모 기업에게 정보화 응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이 소규모 기업의 응용을 촉진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각 유형별 기술 서비스 기관, 기술시장 및 연구기관이 소규모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4)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추진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의 장점을 갖춘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을 보급한다. 중점 지역 및 중점 기업에 대한 시범업무를 추진하고 소규모 기업에게 특허 지도, 특허 대리, 특허에 관한 조기 경보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시행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법복제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혁신에 대한 열성을 보호한다. (15) 혁신형, 벤처형 및 노동집약형의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이 현대서비스업, 전략성 신흥산업, 현대농업과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특별하고 새로운 것”과 대기업과의 협력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기본적 작동에서 혁신적 작동으로의 변화를 가속화 한다. 국가과학기술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원이 과학기술성과를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시키도록 장려한다. 소기업 설립계획을 시행하여 3,000개 기업의 창업기반을 육성 및 지원하고, 창업육성과 지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소기업 설립을 장려하여 사회 취업 확대에 힘쓴다. 각 유형별 과학기술 창업 보육 센터를 적극 발전시켜 2015년까지 창업한 기업이 10만 개 이상에 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집약형 기업의 안정적인 취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제품구조와 서비스 방식 조정을 가속화 한다. (16) 민간투자 분야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빠른 시일 내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는 국가의 유관 정책에 관한 실시세칙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투자의 편리성, 규범성을 촉진하여 소규모 기업이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문화, 관광, 스포츠, 무역 유통 등 분야로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각 유형별 정부성격의 자금은 민간투자에 포함되는 각 유형별 투자주체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17)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를 가속화 한다. 고오염, 높은 에너지소비 및 자원낭비가 심각한 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낙후한 생산능력이 타 지역으로의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재세, 금융, 환경보호, 토지, 산업정책 등 수단을 종합 운영한다. 소규모 기업의 낙후한 기술, 공법 및 장비에 대한 도태 가속화 작업을 지원하며, 인수, 합병, 구조조정, 합작투자 및 산업전환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기회를 잡는다. 5. 소규모 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18)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 소규모 기업이 전자상거래, 신용판매 및 신용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여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중국 국제중소기업박람회 참여 매커니즘을 연구 및 혁신하여 국제화, 시장화, 전문화 등 방면에서의 극복을 촉진한다. 소규모 기업의 박람회를 통한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공업과 무역업의 결합시스템 및 농업과 무역업의 결합시스템 및 국내외 무역 결합시스템을 강화한다. 공동구매후 개별판매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구매, 공동배송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구매원가 절감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방식을 취하는 것을 지도한다. 상업소매기업 밀집 지역을 육성하여 전문시장과 특색 있는 상업지역을 발전시킨다. 체인운영, 프랜차이즈 경영, 물류배송 등 현대적 유통방식을 추진하고, 소규모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19) 세관 통관 서비스를 개선한다. 통관 분류 개혁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게 검사 후 통관 보증, 서면보고, 24시 통관 예약 및 가공무역보증금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연구한다. “속지신고(属地申报, 관할지**세관신고), 구안검사(**口岸验放)”의 통관 형식의 응용범위를 확대한다. 수출입 기업이 사전 분류, 사전 심사가격, 원산지 사전 확정 등을 누릴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물류 통관 원가를 절감한다. (20) 가공무역의 국내판매 수단을 간소화 한다. 소규모 가공무역 기업의 국내판매의 편리함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관 조치를 훌륭히 이행한다. 네트워크 기업의 “다수의 국내판매, 1회 신고”를 허용하고, 국내판매에 대한 당월 내 집중 처리 국내판매 신고 수속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처리시간을 단축시킨다. (21) 집적회로 산업의 체인보세감독 시범업무를 시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집적회로설계 기업이 가공무역 경영단위로서 가공무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집적회로산업 가운데 설계, 칩 제조, 포장테스트 기업 등을 보세감독 범위에 포함시킨다. 6. 소규모 기업이 경영관리 수준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22) 관리혁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관리향상을 위한 계획을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이 재무,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고용 등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한다. 기업관리혁신 성과보급 및 모범적인 시범활동을 시행한다. 소기업의 회계준칙을 실시하여 교육 및 회계 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소규모 기업의 관리자문서비스제도를 구축하여 관리자문기구 및 자원자가 소규모 기업에게 관리자문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23)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소규모 기업 제품 품질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품질에 대한 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품질승낙 활동을 전개한다. 소규모 기업이 건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독촉 및 지도하고, 생산허가, 경영허가, 강제적 인증 등 시장진입 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품질안전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한다. 진보적인 품질관리 이념과 방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국가표준과 수입국가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브랜드 구축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지도한다. 선진기업연맹 표준제정을 장려하여 소규모 기업이 품질보증능력 및 전문적인 협력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선도한다. 국가질검기구와 핵심 연구소의 상당한 지지적 역할 최대한 발휘하고, 질량검험검역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한다. (24) 인력자원개발을 강화한다. 소규모 기업의 노동 고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수단을 확대한다. 전국 중소기업은 은하교육프로젝트(银河培训工程) 및 기업경영관리 인재의 자질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을 중점적으로 하여 매년 50만 명의 경영관리자와 창업자를 육성한다. 소규모 기업이 고도의 기술로 숙련된 인재 양성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기술직 인재 대오건설 업무를 강화하여 국가전문기술직인재 지식갱신프로젝트 등 중요한 인재프로젝트가 소규모 기업에 편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중장기 인재개발 규획개요(2010-2020년) 》에서 확정한 중요 분야는 소규모 기업에 혁신형 전문기술인재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 직원들의 사회보장 정책을 개선한다. (25)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소규모 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개선한다. 소규모 기업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을 신규 채용하고 업무 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교육비 보조금 표준을 적절하게 제고한다. 구체적 표준은 성급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이 확정한다. 소규모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적기에 규정된 액수를 사회보험비로 납부하며, 1년에 대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집행기한은 2014년 말까지 이다. 기업인력의 자원구조를 개선하고, 대학생 창업 지도계획을 실시한다. 이미 시행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자주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감면, 소액담보대출 등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 공공 취업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소규모 기업 설립의 성공률을 제고한다. 7. 소규모 기업의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한다. (26) 산업 클러스터용지 발전용지 안배를 총괄한다. 소기업 창업 기지,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상업소매기업 클러스터 구역 등의 건설을 규획하고, 각급 정부는 용지계획지표를 우선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경제기술개발구(经济技术开发区), 고신기술개발구(高新技术开发区) 및 공업원구(工业园区) 등 각 유형별 원구는 표준 공장 건설에 주력해야 하고, 소규모 기업에게 생산경영 장소를 적극 제공한다. 3년 이내로 임대한 경영장소와 점포의 소규모 기업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27) 소규모 기업의 클러스터 발전환경을 개선한다. 산업 클러스터구의 기술, 전자상거래, 물류, 정보 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선도기업의 지도와 선도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상위와 하위기업 간의 업무분담에 대한 협력, 브랜드 구축과 전문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전환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농촌의 2차, 3차 산업의 소규모 기업 육성을 중점으로 하여 현(县)지역의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의 시범지역 건설 업무를 시행한다.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오염물 배출 종합처리 등 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에너지 절약관리와 “삼폐(三废, 폐기 가스, 폐수, 고체 폐기물)의 중점 처리를 강화한다. 8.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28) 서비스 체계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까지 4,000개의 소규모 기업 서비스를 위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다. 승인된 500개 전국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시범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시범적 선도역할을 발휘한다. 중소기업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각 성(구, 시)의 자원공유, 서비스 협력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총괄을 지원한다. 건전한 서비스 규범, 서비스 평가 및 격려제도를 건립하여 서비스 자원 배분의 이동 및 최적화를 지원한다. 정책적 자문, 창업혁신, 지적재산권, 투자융자, 경영 진단, 검사측정, 인재 육성, 시장개척, 재무 지도, 정보화 서비스 등 각 유형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에게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협회(상회)는 중재자로서의 유대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업계의 자율과 조직 수준을 제고한다. (29) 조정 및 통계 모니터링 지도를 강화한다. 국무원이 중소기업 발전 업무의 선도그룹을 촉진하는 총괄계획, 선도 조직 및 정책적 조정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 부문의 업무 분담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감독검사 및 정책평가를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유관업무를 각 지역, 각 유관 부문의 연간고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통계 및 유관 부문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사 통계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통계조사, 모니터링 분석 및 정기발표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고 개선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본 의견의 구체적 시행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 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국무원2012년 4월 19일  |  | **国务院关于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意见**国发〔2012〕14号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小型微型企业在增加就业、促进经济增长、科技创新与社会和谐稳定等方面具有不可替代的作用，对国民经济和社会发展具有重要的战略意义。党中央、国务院高度重视小型微型企业的发展，出台了一系列财税金融扶持政策，取得了积极成效。但受国内外复杂多变的经济形势影响，当前，小型微型企业经营压力大、成本上升、融资困难和税费偏重等问题仍很突出，必须引起高度重视。为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现提出以下意见。　　一、充分认识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重要意义　　（一）增强做好小型微型企业工作的信心。各级政府和有关部门对当前小型微型企业发展面临的新情况、新问题要高度重视，增强信心，加大支持力度，把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作为巩固和扩大应对国际金融危机冲击成果、保持经济平稳较快发展的重要举措，放在更加重要的位置上。要科学分析，正确把握，积极研究采取更有针对性的政策措施，帮助小型微型企业提振信心，稳健经营，提高盈利水平和发展后劲，增强企业的可持续发展能力。　　二、进一步加大对小型微型企业的财税支持力度　　（二）落实支持小型微型企业发展的各项税收优惠政策。提高增值税和营业税起征点；将小型微利企业减半征收企业所得税政策，延长到2015年底并扩大范围；将符合条件的国家中小企业公共服务示范平台中的技术类服务平台纳入现行科技开发用品进口税收优惠政策范围；自2011年11月1日至2014年10月31日，对金融机构与小型微型企业签订的借款合同免征印花税，将金融企业涉农贷款和中小企业贷款损失准备金税前扣除政策延长至2013年底，将符合条件的农村金融机构金融保险收入减按3%的税率征收营业税的政策延长至2015年底。加快推进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逐步解决服务业营业税重复征税问题。结合深化税收体制改革，完善结构性减税政策，研究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发展的税收制度。　　（三）完善财政资金支持政策。充分发挥现有中小企业专项资金的支持引导作用，2012年将资金总规模由128.7亿元扩大至141.7亿元，以后逐年增加。专项资金要体现政策导向，增强针对性、连续性和可操作性，突出资金使用重点，向小型微型企业和中西部地区倾斜。　　（四）依法设立国家中小企业发展基金。基金的资金来源包括中央财政预算安排、基金收益、捐赠等。中央财政安排资金150亿元，分5年到位，2012年安排30亿元。基金主要用于引导地方、创业投资机构及其他社会资金支持处于初创期的小型微型企业等。鼓励向基金捐赠资金。对企事业单位、社会团体和个人等向基金捐赠资金的，企业在年度利润总额12%以内的部分，个人在申报个人所得税应纳税所得额30%以内的部分，准予在计算缴纳所得税税前扣除。　　（五）政府采购支持小型微型企业发展。负有编制部门预算职责的各部门，应当安排不低于年度政府采购项目预算总额18%的份额专门面向小型微型企业采购。在政府采购评审中，对小型微型企业产品可视不同行业情况给予6%-10%的价格扣除。鼓励大中型企业与小型微型企业组成联合体共同参加政府采购，小型微型企业占联合体份额达到30%以上的，可给予联合体2%-3%的价格扣除。推进政府采购信用担保试点，鼓励为小型微型企业参与政府采购提供投标担保、履约担保和融资担保等服务。　　（六）继续减免部分涉企收费并清理取消各种不合规收费。落实中央和省级财政、价格主管部门已公布取消的行政事业性收费。自2012年1月1日至2014年12月31日三年内对小型微型企业免征部分管理类、登记类和证照类行政事业性收费。清理取消一批各省（区、市）设立的涉企行政事业性收费。规范涉及行政许可和强制准入的经营服务性收费。继续做好收费公路专项清理工作，降低企业物流成本。加大对向企业乱收费、乱罚款和各种摊派行为监督检查的力度，严格执行收费公示制度，加强社会和舆论监督。完善涉企收费维权机制。　　三、努力缓解小型微型企业融资困难　　（七）落实支持小型微型企业发展的各项金融政策。银行业金融机构对小型微型企业贷款的增速不低于全部贷款平均增速，增量高于上年同期水平，对达到要求的小金融机构继续执行较低存款准备金率。商业银行应对符合国家产业政策和信贷政策的小型微型企业给予信贷支持。鼓励金融机构建立科学合理的小型微型企业贷款定价机制，在合法、合规和风险可控前提下，由商业银行自主确定贷款利率，对创新型和创业型小型微型企业可优先予以支持。建立小企业信贷奖励考核制度，落实已出台的小型微型企业金融服务的差异化监管政策，适当提高对小型微型企业贷款不良率的容忍度。进一步研究完善小企业贷款呆账核销有关规定，简化呆账核销程序，提高小型微型企业贷款呆账核销效率。优先支持符合条件的商业银行发行专项用于小型微型企业贷款的金融债。支持商业银行开发适合小型微型企业特点的各类金融产品和服务，积极发展商圈融资、供应链融资等融资方式。加强对小型微型企业贷款的统计监测。　　（八）加快发展小金融机构。在加强监管和防范风险的前提下，适当放宽民间资本、外资、国际组织资金参股设立小金融机构的条件。适当放宽小额贷款公司单一投资者持股比例限制。支持和鼓励符合条件的银行业金融机构重点到中西部设立村镇银行。强化小金融机构主要为小型微型企业服务的市场定位，创新金融产品和服务方式，优化业务流程，提高服务效率。引导小金融机构增加服务网点，向县域和乡镇延伸。符合条件的小额贷款公司可根据有关规定改制为村镇银行。　　（九）拓宽融资渠道。搭建方便快捷的融资平台，支持符合条件的小企业上市融资、发行债券。推进多层次债券市场建设，发挥债券市场对微观主体的资金支持作用。加快统一监管的场外交易市场建设步伐，为尚不符合上市条件的小型微型企业提供资本市场配置资源的服务。逐步扩大小型微型企业集合票据、集合债券、集合信托和短期融资券等发行规模。积极稳妥发展私募股权投资和创业投资等融资工具，完善创业投资扶持机制，支持初创型和创新型小型微型企业发展。支持小型微型企业采取知识产权质押、仓单质押、商铺经营权质押、商业信用保险保单质押、商业保理、典当等多种方式融资。鼓励为小型微型企业提供设备融资租赁服务。积极发展小型微型企业贷款保证保险和信用保险。加快小型微型企业融资服务体系建设。深入开展科技和金融结合试点，为创新型小型微型企业创造良好的投融资环境。　　（十）加强对小型微型企业的信用担保服务。大力推进中小企业信用担保体系建设，继续执行对符合条件的信用担保机构免征营业税政策，加大中央财政资金的引导支持力度，鼓励担保机构提高小型微型企业担保业务规模，降低对小型微型企业的担保收费。引导外资设立面向小型微型企业的担保机构，加快推进利用外资设立担保公司试点工作。积极发展再担保机构，强化分散风险、增加信用功能。改善信用保险服务，定制符合小型微型企业需求的保险产品，扩大服务覆盖面。推动建立担保机构与银行业金融机构间的风险分担机制。加快推进企业信用体系建设，切实开展企业信用信息征集和信用等级评价工作。　　（十一）规范对小型微型企业的融资服务。除银团贷款外，禁止金融机构对小型微型企业贷款收取承诺费、资金管理费。开展商业银行服务收费检查。严格限制金融机构向小型微型企业收取财务顾问费、咨询费等费用，清理纠正金融服务不合理收费。有效遏制民间借贷高利贷化倾向以及大型企业变相转贷现象，依法打击非法集资、金融传销等违法活动。严格禁止金融从业人员参与民间借贷。研究制定防止大企业长期拖欠小型微型企业资金的政策措施。　　四、进一步推动小型微型企业创新发展和结构调整　　（十二）支持小型微型企业技术改造。中央预算内投资扩大安排用于中小企业技术进步和技术改造资金规模，重点支持小型企业开发和应用新技术、新工艺、新材料、新装备，提高自主创新能力、促进节能减排、提高产品和服务质量、改善安全生产与经营条件等。各地也要加大对小型微型企业技术改造的支持力度。　　（十三）提升小型微型企业创新能力。完善企业研究开发费用所得税前加计扣除政策，支持企业技术创新。实施中小企业创新能力建设计划，鼓励有条件的小型微型企业建立研发机构，参与产业共性关键技术研发、国家和地方科技计划项目以及标准制定。鼓励产业技术创新战略联盟向小型微型企业转移扩散技术创新成果。支持在小型微型企业集聚的区域建立健全技术服务平台，集中优势科技资源，为小型微型企业技术创新提供支撑服务。鼓励大专院校、科研机构和大企业向小型微型企业开放研发试验设施。实施中小企业信息化推进工程，重点提高小型微型企业生产制造、运营管理和市场开拓的信息化应用水平，鼓励信息技术企业、通信运营商为小型微型企业提供信息化应用平台。加快新技术和先进适用技术在小型微型企业的推广应用，鼓励各类技术服务机构、技术市场和研究院所为小型微型企业提供优质服务。　　（十四）提高小型微型企业知识产权创造、运用、保护和管理水平。中小企业知识产权战略推进工程以培育具有自主知识产权优势小型微型企业为重点，加强宣传和培训，普及知识产权知识，推进重点区域和重点企业试点，开展面向小型微型企业的专利辅导、专利代理、专利预警等服务。加大对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产品的打击力度，维护市场秩序，保护创新积极性。　　（十五）支持创新型、创业型和劳动密集型的小型微型企业发展。鼓励小型微型企业发展现代服务业、战略性新兴产业、现代农业和文化产业，走“专精特新”和与大企业协作配套发展的道路，加快从要素驱动向创新驱动的转变。充分利用国家科技资源支持小型微型企业技术创新，鼓励科技人员利用科技成果创办小型微型企业，促进科技成果转化。实施创办小企业计划，培育和支持3000家小企业创业基地，大力开展创业培训和辅导，鼓励创办小企业，努力扩大社会就业。积极发展各类科技孵化器，到2015年，在孵企业规模达到10万家以上。支持劳动密集型企业稳定就业岗位，推动产业升级，加快调整产品结构和服务方式。　　（十六）切实拓宽民间投资领域。要尽快出台贯彻落实国家有关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政策的实施细则，促进民间投资便利化、规范化，鼓励和引导小型微型企业进入教育、社会福利、科技、文化、旅游、体育、商贸流通等领域。各类政府性资金要对包括民间投资在内的各类投资主体同等对待。　　（十七）加快淘汰落后产能。严格控制高污染、高耗能和资源浪费严重的小型微型企业发展，防止落后产能异地转移。严格执行国家有关法律法规，综合运用财税、金融、环保、土地、产业政策等手段，支持小型微型企业加快淘汰落后技术、工艺和装备，通过收购、兼并、重组、联营和产业转移等获得新的发展机会。　　五、加大支持小型微型企业开拓市场的力度　　（十八）创新营销和商业模式。鼓励小型微型企业运用电子商务、信用销售和信用保险，大力拓展经营领域。研究创新中国国际中小企业博览会办展机制，促进在国际化、市场化、专业化等方面取得突破。支持小型微型企业参加国内外展览展销活动，加强工贸结合、农贸结合和内外贸结合。建设集中采购分销平台，支持小型微型企业通过联合采购、集中配送，降低采购成本。引导小型微型企业采取抱团方式“走出去”。培育商贸企业集聚区，发展专业市场和特色商业街，推广连锁经营、特许经营、物流配送等现代流通方式。加强对小型微型企业出口产品标准的培训。　　（十九）改善通关服务。推进分类通关改革，积极研究为符合条件的小型微型企业提供担保验放、集中申报、24小时预约通关和不实行加工贸易保证金台账制度等便利通关措施。扩大“属地申报，口岸验放”通关模式适用范围。扩大进出口企业享受预归类、预审价、原产地预确定等措施的范围，提高企业通关效率，降低物流通关成本。　　（二十）简化加工贸易内销手续。进一步落实好促进小型微型加工贸易企业内销便利化相关措施，允许联网企业“多次内销、一次申报”，并可在内销当月内集中办理内销申报手续，缩短企业办理时间。　　（二十一）开展集成电路产业链保税监管模式试点。允许符合条件的小型微型集成电路设计企业作为加工贸易经营单位开展加工贸易业务，将集成电路产业链中的设计、芯片制造、封装测试企业等全部纳入保税监管范围。　　六、切实帮助小型微型企业提高经营管理水平　　（二十二）支持管理创新。实施中小企业管理提升计划，重点帮助和引导小型微型企业加强财务、安全、节能、环保、用工等管理。开展企业管理创新成果推广和标杆示范活动。实施小企业会计准则，开展培训和会计代理服务。建立小型微型企业管理咨询服务制度，支持管理咨询机构和志愿者面向小型微型企业开展管理咨询服务。　　（二十三）提高质量管理水平。落实小型微型企业产品质量主体责任，加强质量诚信体系建设，开展质量承诺活动。督促和指导小型微型企业建立健全质量管理体系，严格执行生产许可、经营许可、强制认证等准入管理，不断增强质量安全保障能力。大力推广先进的质量管理理念和方法，严格执行国家标准和进口国标准。加强品牌建设指导，引导小型微型企业创建自主品牌。鼓励制定先进企业联盟标准，带动小型微型企业提升质量保证能力和专业化协作配套水平。充分发挥国家质检机构和重点实验室的辐射支撑作用，加快质量检验检疫公共服务平台建设。　　（二十四）加强人力资源开发。加强对小型微型企业劳动用工的指导与服务，拓宽企业用工渠道。实施国家中小企业银河培训工程和企业经营管理人才素质提升工程，以小型微型企业为重点，每年培训50万名经营管理人员和创业者。指导小型微型企业积极参与高技能人才振兴计划，加强技能人才队伍建设工作，国家专业技术人才知识更新工程等重大人才工程要向小型微型企业倾斜。围绕《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年）》确定的重点领域，开展面向小型微型企业创新型专业技术人才的培训。完善小型微型企业职工社会保障政策。　　（二十五）制定和完善鼓励高校毕业生到小型微型企业就业的政策。对小型微型企业新招用高校毕业生并组织开展岗前培训的，按规定给予培训费补贴，并适当提高培训费补贴标准，具体标准由省级财政、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门确定。对小型微型企业新招用毕业年度高校毕业生，签订1年以上劳动合同并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给予1年的社会保险补贴，政策执行期限截至2014年底。改善企业人力资源结构，实施大学生创业引领计划，切实落实已出台的鼓励高校毕业生自主创业的税费减免、小额担保贷款等扶持政策，加大公共就业服务力度，提高高校毕业生创办小型微型企业成功率。　　七、促进小型微型企业集聚发展　　（二十六）统筹安排产业集群发展用地。规划建设小企业创业基地、科技孵化器、商贸企业集聚区等，地方各级政府要优先安排用地计划指标。经济技术开发区、高新技术开发区以及工业园区等各类园区要集中建设标准厂房，积极为小型微型企业提供生产经营场地。对创办三年内租用经营场地和店铺的小型微型企业，符合条件的，给予一定比例的租金补贴。　　（二十七）改善小型微型企业集聚发展环境。建立完善产业集聚区技术、电子商务、物流、信息等服务平台。发挥龙头骨干企业的引领和带动作用，推动上下游企业分工协作、品牌建设和专业市场发展，促进产业集群转型升级。以培育农村二、三产业小型微型企业为重点，大力发展县域经济。开展创新型产业集群试点建设工作。支持能源供应、排污综合治理等基础设施建设，加强节能管理和“三废”集中治理。　　八、加强对小型微型企业的公共服务　　（二十八）大力推进服务体系建设。到2015年，支持建立和完善4000个为小型微型企业服务的公共服务平台，重点培育认定500个国家中小企业公共服务示范平台，发挥示范带动作用。实施中小企业公共服务平台网络建设工程，支持各省（区、市）统筹建设资源共享、服务协同的公共服务平台网络，建立健全服务规范、服务评价和激励机制，调动和优化配置服务资源，增强政策咨询、创业创新、知识产权、投资融资、管理诊断、检验检测、人才培训、市场开拓、财务指导、信息化服务等各类服务功能，重点为小型微型企业提供质优价惠的服务。充分发挥行业协会（商会）的桥梁纽带作用，提高行业自律和组织水平。　　（二十九）加强指导协调和统计监测。充分发挥国务院促进中小企业发展工作领导小组的统筹规划、组织领导和政策协调作用，明确部门分工和责任，加强监督检查和政策评估，将小型微型企业有关工作列入各地区、各有关部门年度考核范围。统计及有关部门要进一步加强对小型微型企业的调查统计工作，尽快建立和完善小型微型企业统计调查、监测分析和定期发布制度。　　各地区、各部门要结合实际，研究制定本意见的具体贯彻落实办法，加大对小型微型企业的扶持力度，创造有利于小型微型企业发展的良好环境。　　　　　　　　　　　　　　　　　　　　　　　　 国务院　　　　　　　　　　　　　　　　　　　　　　　　二○一二年四月十九日 |